의안 버 호

1647

【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]

토 J

1. 검토경과

가. 제 출 일 자 : 2020. 7. 3.(금)

나. 제 출 자 : 중구청장

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0. 7. 8.(수)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0. 7. 20.(월)

2. 제정이유

O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·조정하기 위해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이 개정(2020. 6. 4.시행)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·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 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책무(안 제1조, 안 제2조)
- 나.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· 운영(안 제3조)
- 다. 지원다의 구성, 단장의 임무, 실무팀 편성 및 임무(안 제4조 ~ 안 제6조)
- 라. 재난 상황 공유 및 보고(안 제7조)
- 마.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(안 제8조)

4. 근거법규

O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6조, 제17조의2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제정안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제17조의2제5 항에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ㆍ운영에 대하여 필요 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 하도록 함에 따라, 재난시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통합봉사지원단의 구

12 (제227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성 ·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서

○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됨.

거 법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- 제16조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 · 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 · 도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두고, 시장 · 군 수 · 구청장은 시 · 군 · 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"시 · 군 · 구대책본부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"지역대책본부"라 한다)의 본부장(이하 "지역대책본부장"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되며,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 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.
 - ③ 시·군·구대책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의 총괄·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 현장 통합지원본부(이하 "통합지원본부"라 한다)를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긴급구조에 대해서는 제52조에 따른 시·군 · 구긴급구조통제단장의 현장지휘에 협력하여야 한다.
 - ④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관할 시·군·구의 부단체장이 되며, 실무반을 편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⑤ 지역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7조의2(재난현장 통합지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)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지원봉사지원단을 설치 ·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자원봉사자의 모집 · 등록
 - 2.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
 - 3.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
 - 4.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
 - 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 - 6.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④ 행정안전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

14 (제227회-복지건설위제1차부록)

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·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